



보건복지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요양병원 신규 입원 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안내

1. 관련 : 의료기관정책과-7318호(2021.11.24.)
2. 우리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, 감염취약시설의 방역수칙 강화를 위해 관련 사항을 조치하고 있습니다.
3. 요양병원 관리 강화를 위해 신규 입원 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안내드리니,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대 상 : 요양병원 신규 입원환자

나. 내 용

- (현행) 1회 PCR 검사(입원 시) → (변경) 2회 PCR 검사(①입원 시, ②격리 3일차)
- 입원환자 및 입원 예정자로 입원진료에 준하여 본인부담률 20% 적용

다. 적용기간 : '21.11.26.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적용

* 관련 고시(보건복지부 2021-217호, 2021.8.11.)는 추후 개정 예정. 끝.

보건복지부장관

수신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장, 중앙방역대책본부장,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병원협회장, 대한요양병원협회장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, 의료기관정책과장



주무관 송서현 보건사무관 조영대 보험급여과장 이종규 전결 2021.11.26.

협조자

시행 보험급여과-5895 (2021. 11. 26.) 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보건복지부 / <http://www.mohw.go.kr>

전화번호 044-202-2737 팩스번호 044-202-3934 / shsong98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